

■ 저작권법

제5조(2차적저작물)

1.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(이하 "2차적저작물"이라 한다)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2.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6조(편집저작물)

1.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2.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| 저작권 침해

유통 콘텐츠

저작물

2차적 저작물

저작 형태

Dead Copy

변형된 창작물

침해 유형

직접적 침해

간접적 침해

이해관계자

작곡자/편곡자
작사자
연주자
제작자
유통업자
그 외...

작곡자/편곡자
작사자

| 저작권 해결

유통 콘텐츠

저작물

2차적 저작물

신탁 기관과 협의

신탁 기관 없음

저작권자 개별 동의 필요

저작권 = 인격권 + 재산권

인격권 보호 정책

수익 배분 시스템

| 수익 배분 시스템

유통 콘텐츠

~~저작물~~

2차적 저작물

100%

40%

60%

마진

배분

Type A

Type B

Type C

제작자

20%

30%

4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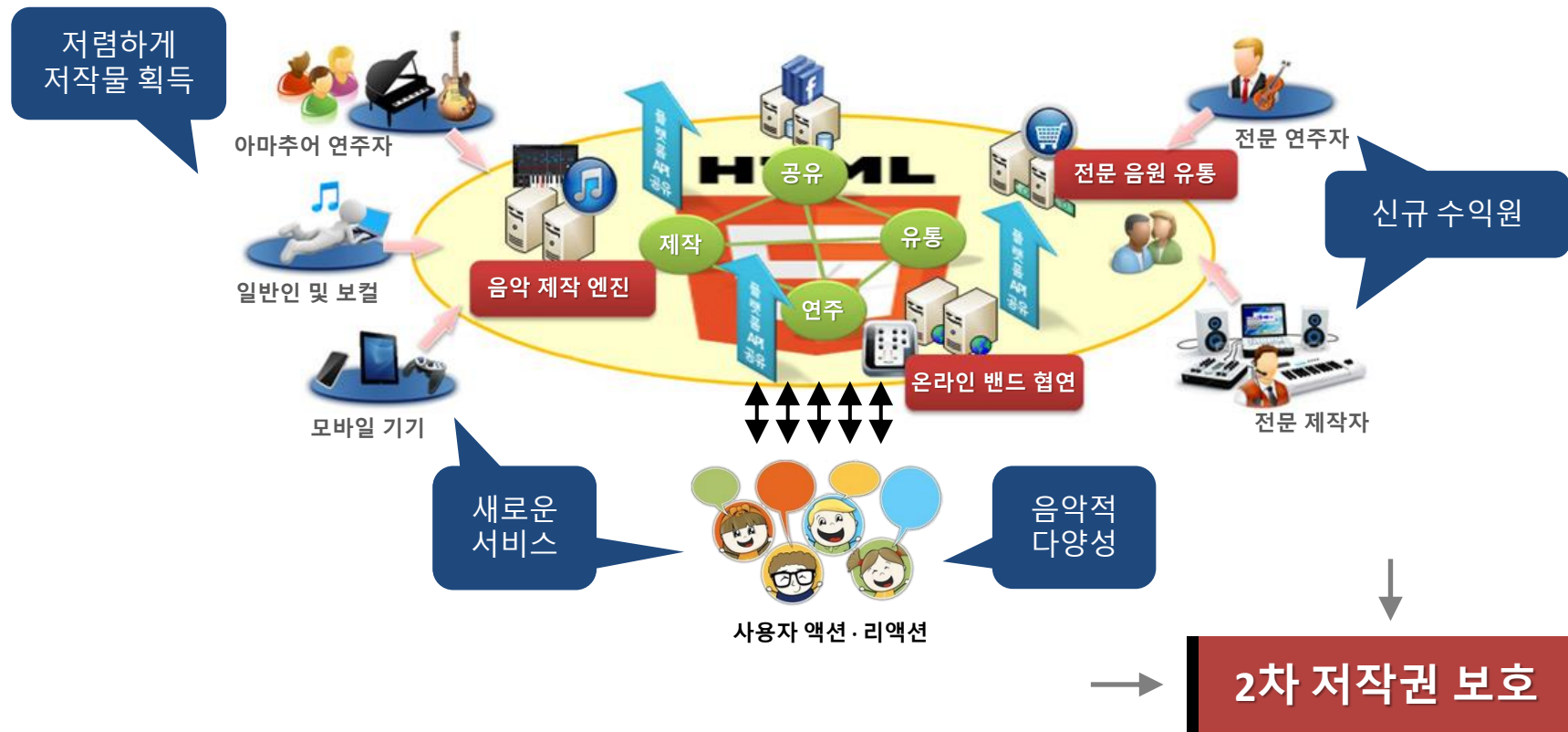
저작권자

40%

30%

20%

모두에게 이익



의견서

문서번호 2013-5-29
수신 00000
참조 ICS부서
발신 변호사 송기인 법률사무소
제목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

위 제목 질의에 대하여 변호사

다

1. 질의의 요지.

귀사가 기획하는 음악 서비스
접 연주하거나 변형한 음원을
더하여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
알 수 없는데다 음악 저작권협
문에 여러 형태로 변형된 2차
락을 받아야 하지만 소요되는
수 없어 일반적인 저작권 사용

3. 결론.

이상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음원의 사용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
검토하였는바, 이상의 문제는 서비스의 불특정성 및 신속성과 그에 대하
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초래되는 문제이나 앞으로는 유튜브와 같은
서비스가 보편화 될 것이므로 귀사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으

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음원 사용의 문제점 및 대책

저작권 협회는 원곡의 저작권 신탁만 받았기 때문에
2차 저작물은 원작자들에게 개별적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,
일반적인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적용하기가
불가능하여,

법적 제도적으로 보완될 때 까지는 귀사와 같이 대응할 수 밖
에 없다고 사료됩니다.